2015년 3월 3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월 29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www.smba.go.kr

보 도 자 료

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중기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042-481-4416), 강기삼 사무관(4422)

핀테크 규제 해소, 그 첫 발을 딛다!

- 핀테크, 코넥스 규제 해소를 위한 창업지원법령 개정 완료 -

□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적 규제 해소 노력이 이달 말 결실을 맺게 되었음**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개정 내용을 **3월 31일에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그간 창업투자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고 **핀테크는 금융 및 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으나,

* 투자금지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업(일부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베팅업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되는 대상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또한, 그간 창업지원법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 및 조합 출자금의 일정액 이상**(최소 40%)**을 비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이로 인해 **코넥스 기업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할 요소가 부족**하였으나,

○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신주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핀테크 및 코넥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한편, 중소기업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핀테크를 창업투자회사 투자가능 업종에 포함**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경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임

붙임 : 창업지원법령 관련 규정 및 신·구 조문 대비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강기삼 사무관(☎ 042-481-4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 창업지원법령 관련 규정 >

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을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할 때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인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시행령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로서 그 업무가 창업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함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나 회사
3.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투자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다.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창업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 중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제9조(투자의 범위) ---------- ---------- ---------- ----------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	1. ---------- ---------- ---------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